

조례」 제2조의2(수입증지 요금계기)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2월 17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○ 사용 승인 및 고시내역

발행기관명	계기고유번호		발행장소	발행개시일
	폐기	신규		
신 원 동	GT100-2689	GT100-6597	신원동주민센터	2022.2.17.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2-20호 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21-66호 (2021.05.27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(조합)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

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2월 17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대도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: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37-83 외 1필지 / 1,790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시행자명	대표자	주소
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	김복실	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37-83, 306호

4. 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6개월

5.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: 2022.02.15.

6. 사업시행계획 변경내용

가. 건축계획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대지면적(㎡)	1,767.96	1,741	측량에 의한 대지면적 감소
연 면 적(㎡)	7,540.20	7,431.32	108.88㎡ 감소
건 폐 율(%)	47.70	46.97	-
용 적 륜(%)	359.87	359.19	-
높이(m)	30	30	-
건축물의 주용도	아파트	아파트	-
세 대 수	76세대	75세대	1세대 감소
층 수	지하1층/지상11층	지하1층/지상11층	-

나. 분양·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구분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)				
	59A(59.74)	59B(59.74)	59C(59.74)	54A(54.92)	52A(52.96)
변경 전	50	10	10	4	2
변경 후	50	10	10	4	1

7. 기타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주택과(☎02-879-6322)에 비치 보관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2-21호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을 위한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숙박시설 방역강화 조치 수정고시

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고시(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2-13호, 2022. 2. 7.)와 관련하여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(2022. 2. 9.)에 따른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고시 합니다.

2022년 2월 17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1. 적용기간: 2022년 2월 9일(월) 0시 ~ 2월 20일(일) 24시

※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. 2.21(월) 05시까지 적용

2. 대 상: 서울시 관악구 소재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숙박시설

3. 내 용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

4. 변경사항

- (1)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(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 제2호 아목 개정)

◆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
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별표3 제2호 개별기준 아목)

구 분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 이상
기 준	150만원	300만원	-
개 정	50만원	100만원	200만원

- (2)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(법 제49조 제3항)의 세부기준 개정(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10 제2호 가목 개정)

◆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, 예방법중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
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2조 제1항 별표10 제2호 개별기준 가목)

구 분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	5차 이상 위반
기 준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	-
개 정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